

eAnSe.com • • • 2024/6/4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計·經營 戰略

거래 쌍방간 법정분쟁결과 법정이자는 비영업대금이자소득인가?

개념, 구분	과세여부, 소득종류, 적용원천징수세율
법정이자 판결	당사자간 민사소송결과 판결금에 대한 소송기간의 법정이자는 이자소득?
대금업자	대금업 표방하고 금전대여사업은 금융업 사업수익임(원천징수 안함)
원천징수세율	비영업 이자소득이면 원천징수(법인 25%, 개인 27.5%) 후 지급, 이자소득아니면 미징수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다목(부당이득 반환시 지급받는 이자 : 기타소득 : 원천세율 22%)
손해배상금의 이자	손해의 배상액은 소득이 아니며 법정이자도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아 원천징수 안함(통칙 16-0···2), 원천징수 없음
위약·해약 판결이자	손해를 초과하는 위약금 배상금은 기타소득이고, 법정이자도 기타소득으로 봄(통칙 16-0…2), 22% 원천징수
계약취소 환불이자	손해배상이 아니고, 쟁점대금이 실질적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의 이자는 비영업대금이자소득임(개인 27.5%, 법인 25% 원천징수)
금전사용대가	외상매출금·미수금의 소비대차전환이나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은 이자소득임(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계약금 등의 반환이자	거래쌍방 계약금 과다지급반환 판결 추가이자는, 금전소비대차의 일종으로 비영업대금이자로 분류
채권연장이자	외상매출금, 미수금의 지급기일 연장 관련금액 : 이자소득 아니고 일반수입(익금)임

- 안세회계법인 대표이사 박윤종 공인회계사 작성